

『구미시 「공항경제권 거점도시」 특례사무 지정 신청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'22.1. 시행)으로 지역의 특징 및 실질적인 행정수요,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게 됨.
- 구미시는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과 가장 인접한 내륙 최대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급변하는 경제 상황과 산업구조, 공항배후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·재정적 수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.
- 이에 특례사무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의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20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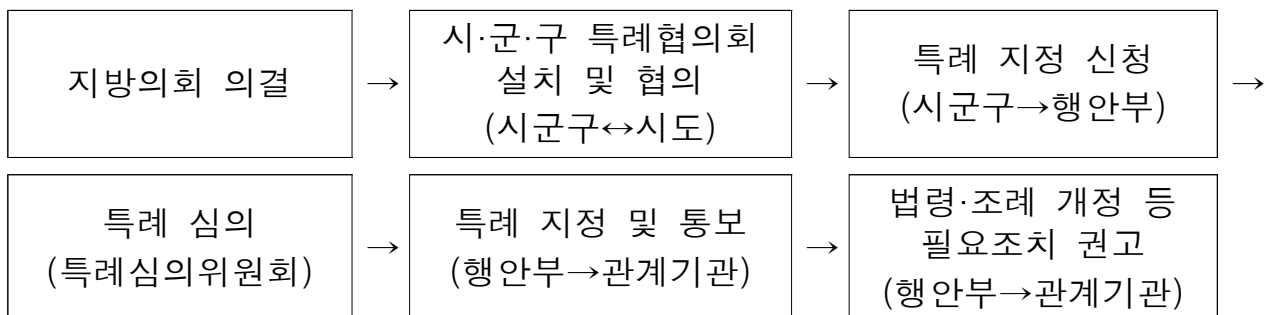
3. 주요내용

- 추진방향
 - 비전설정 :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선도 <공항경제권 특례도시 구미>
 - 목 표 :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지형 변화와 통합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에 대응할 수 있는 특례사무 발굴

○ 추진내용

특례사무 신청목록	[산업입지개발지침] ▶ 산업입지 개발, 산업단지 지정·개발·지원 시 지역적 특성 반영 및 지역 의견 제출
	[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] ▶ 지역 실정과 여건,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단지 조성
	[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] ▶ 지역 산업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주력산업 및 기업육성 정책 추진
	[협동화사업에 대한 사무] ▶ 산업단지 내 기업체 협동화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및 동종기업 유치로 집적화 효과 달성
	[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사무] ▶ 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의 집단화·협업화를 통한 기업활동 지원과 입주기업 혜택 제공을 통한 투자여건 조성
	[도시·군관리계획에 대한 사무] ▶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및 용도지역·지구의 지정 권한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응

○ 추진절차

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관련부서(기업지원과, 신성장산업과, 도시계획과)와 합의됨
- 기 타 : 해당 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

-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특례지정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산업단지 지정, 지역산업진흥 등 산업 관련 특례를 통해 통합신공항의 배후도시로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의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, 새로운 미래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일관성 있고 신속한 도시관리계획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.
- 따라서, 도(道)의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 시가 주도하는, 특화된 행정사무를 가능하게 해줄 <특례사무 지자체 지정> 신청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